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84
----------	-------

발의연월일 : 2026. 2. 19.

발 의 자 : 강경숙 · 황운하 · 김선민
임호선 · 진선미 · 문정복
백선희 · 박은정 · 서왕진
정을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및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인구 · 산업 · 외교 환경의 변화로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빠르게 다양화 ·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연동하여 국가 차원의 교류 · 협력 · 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언어에 대한 교육 수요가 지역단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통령령에 의한 지정 중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여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관할 지역의 다문화학생 등의 국적 · 언어 구성을 고

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 교육·인력양성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전략언어 육성 체계를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완·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발전을”을 “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를”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 등) ① 교육감은 관할 지역 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의 국적, 사용 언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육감이 다문화학생등에게 외국어를 교육하기 위한 단체·기관 등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2에 따라 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로 지정·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u>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u> <u>요를</u> ----- -----.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7. (생 략) ③ (생 략) <u><신 설></u>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u>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u>지역특수언어교육센터</u> 등) ① <u>교육감은 관할 지역 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의 국적, 사용 언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를 교육하는 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